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4가합11041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 2016. 5. 13.

판결 선고 2016. 5. 27.

##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D, E와 연대하여 309,151,402원 및 그  
중276,404,667원에 대하여 2009. 3. 6.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4.  
12. 1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E와 피고 B 사이에 2011. 2. 24. 체결된 금전증여계약 및E와 피고 C

사이에 2010. 7. 2.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90,000,000원, 피고 C은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1. 12.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44,000,000원, 보증기한 2002.12. 4.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1차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와 그의 처 F은 같은 날 1차 보증계약에 기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06. 11.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23.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2차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는 같은 날 2차 보증계약에 기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6. 11. 27.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5) 소외 회사가 2008. 12. 30.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09. 3. 6. 위 은행에게 1차 보증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147,637,548원 및 2차 보증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213,439,465원의 합계 361,077,013원을

변제하였다.

6) 원고는 소외 회사, E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8.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및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557,143원과 그 중 361,077,013원에 대하여 2009. 3. 6.부터 2009. 7. 2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7) 1, 2차 보증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은 2009. 3. 6.부터 2012. 11.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 C, B의 부동산 임차 또는 매수

1) E의 딸인 피고 C은 2010. 7. 2. 하남시 G에 있는 H아파트 제507동 303호(이하'H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2) E의 사위이자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2011. 2. 24.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아파트 제109동 제1803호(이하 'J아파트'라 한다)를 3억 9,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을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4호증, 을 1,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2015. 12. 8.자 주식회사 신한은 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사고발생 후인 2009. 7. 17. 설립되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사위인 피고 B이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피고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 피고 B은 K대학교 무용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의 업종에 관하여는 문외한 이고, E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의 담당법원에 제출한 해명서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나)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설립목적이 '화공약품 및 기계류 수출입업, 화공약품 제조·판매업 등'으로 동일하고 상호가 유사하며, 2008. 10.경부터 2008. 12.경까지소외 회사의 거래처 중 13개 업체가 피고 회사의 설립 직후 피고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등 거래처도 유사하다.

다) 피고 B은 E의 친구인 L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주금을 납입하였는데, 당시 L도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여 마이너스계좌를 이용하던 중 제3자가 위 마이너스에 송금한 73,333,400원으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자신의 주금 2,000만 원도 납입하였다. 한편, E는 피고 회사 설립 직후인 2009. 7. 24. L의 위 계좌로 13,684,000원을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 E와 연대하여 위 구상금 309,151,402원 및 그 중 276,404,66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9. 3. 6.부터 2012. 11. 30.까지약정지연손해금을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4. 12.12.까지 약정지연손해금을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B, C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0. 7. 2. 피고 C에게 H아파트 임차보증금자금 5,000만원을, 2011. 2. 24. 피고 B에게 J아파트 매수자금 중 1억 9,000만 원을 각 증여하여 위피고들이 이를 각 임차 또는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E의 위 각 증여행위는 채권자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각 매수자금 상당의 가액반환을 구한다.

#### 나. 판단

그러나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가 피고들에게 위 각 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각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김윤선, 판사 홍성균